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서상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769 발 의 년 월 일: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:서상열 의원(1명) 찬 성 자:강석주, 경기문, 고

산 자: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선, 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 서호연, 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.

> 정지웅, 채수지, 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 허 훈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51명)

윤종복, 이병윤, 이상욱, 이종태, 임춘대, 장태용,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이후 실내공간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실내 공기질 관리 범위에 미세먼지 및 기타 오염물질을 넘어 전염성 바이러스까 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
- 특히, 학생들이 생활하고 학습하는 공간인 학교의 선제적 안전관리와 방역 조치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
- 이에,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는 ·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에 바이 러스에 의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의 유지·관리 , 감염병 예방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 록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는 ·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의 유지·관리, 감염 병 예방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학교보건법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기타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의 유지·관리, 감염병 예방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및 관리방안 마련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4조(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| 제4조(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|
| 등) ① (생 략) | 등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| ② |
| 내용을 포함한다. | · |
| 1. ~ 4. (생 략)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|
| <u> <신 설></u> | 5. 기타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의 |
| | 유지·관리, 감염병 예방 등 유 |
| | 관사업과의 연계 및 관리방안 |
| | <u>마련</u> |
| <u>5</u> . (생 략) | <u>6</u> . (현행 제5호와 같음) |
| ③ (생 략) | ③ (현행과 같음) |